

대구대학교 헌혈의 집 신축사업 공동협약서

대구대학교 총장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대한적십자사대구경북혈액원장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대구대학교 내에 헌혈의 집 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 1조(목적) 이 협약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대구대학교 소유 부지 내에 헌혈의 집 건축과 소유권, 사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적용범위) 건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에 의한다.

제 3조(신축위치) 건축위치는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내 제1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 사이 일원에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로 지상 1~2층 약 45평 내외로 한다.

제 4조(건축개요) 건축개요는 다음과 같다.

1. 기존 경산캠퍼스에 신축 중인 최근의 건축물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건축물로 신축한다.
2. 건축 인·허가 및 설계·시공의 주체는 “갑”으로 하며, “을”은 헌혈의 집 및 부속 휴게실 용도에 맞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건축 완료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3. “갑”이 설계·시공 발주 후 공사대금은 기성도에 따라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가지급하며 건축 완료 후 최종 정산한다.
4. 헌혈의 집에 사용되는 내부 기자재, 가구, 냉·온풍기 등은 건축비에서 제외한다.

제 5조(소유권 및 영업권) 소유와 영업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1. 헌혈의 집 신축과 동시에 소유권은 “학교법인영광학원”에서 갖는다.
2. “을”은 헌혈의 집 신축과 동시에 소유권을 “학교법인영광학원”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신축 건물에 대한 영업권을 신축일로부터 20년 동안 무상으로 행사하고 20년 후 “갑”에게 영업권을 반납하며, 또한 “갑”은 “을”이 헌혈의 집에 영업권을 행사하는 20년 동안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. 다만, 20년을 경과하기 이전에 “을”이 본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, 사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 “갑”은 이를 임의 처리할 수 있다.
3. 영업권에 대한 계약은 사용권 부여기간(20년) 범위 내에서 최초 10년간 계약하고, 이후 다시 계약을 연장한다.

제 6조(협약의 해지) “갑”이 “을” 영업장소에 재건축을 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이 협약의 목적 수행에 장애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“을”과 협의하며, “을”이 영업권을 행사하는 기간인 20년 동안에 “갑”이 불가피하게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“갑”은 “을”에 건축한 헌혈의 집의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을 현금 보상하거나, 또는 대구대학교 부지 내에 동일한 헌혈의 집을 건축하여 주어야 한다.

제 7조(건축시행과 편의제공) 건축 인·허가 및 설계·시공에 필요한 편익을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제공한다.

제 8조(헌혈의 집 관리) 헌혈의 집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전력·용수 등 각종 관리비는 영업권을 행사하는 기간동안 “을”이 부담한다.

제 9조(해석) 이 협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0조(효력)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.

위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04년 8월 24일

“갑”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장 이재규

이재규

“을”



대한적십자사
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

대구경북
혈액원장 서용희

서용희